

사회적기업 경북미래문화재단 · 한국남부발전(주) 안동천연가스발전소
지역지원사업(육영사업) 선진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 협약서

사회적기업 경북미래문화재단과 한국남부발전(주) 안동천연가스발전소는 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)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육영사업의 선진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약 당사자로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육영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양질의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본 협약서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긴밀히 협력한다.

1. 발전소 주변지역 초·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술교육사업 추진
2. 발전소 주변지역 청소년에게 문화예술활동 향유 기회 제공
3. 육영사업 선진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자문 지원
4.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항

제3조(협력창구)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업무 전담부서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 등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이나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협약의 변경) 양 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.

제6조(해약) 양 기관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본 협약의 해약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이득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.

1.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심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
2. 또는 양 기관이 스스로 해약 합의를 한 경우

제7조(효력발생)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약 합의가 없는 한 유효하다.

양 기관은 상호간의 우호와 존경을 바탕으로 위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며 본 협약 내용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에 사인한다.

2013년 3월 20일



이사장 권명환



한국남부발전주
안동천연가스발전소

소장 백세현